

국제해양수산정보

편 집 실

■ 5톤이상 어선 초단파 무선설비 50%까지 정부 지원

- 해양부, 올해부터 어선과 일반 선박간 통신 체제 구축
 - 해양수산부는 안전설비 지원사업으로 어선과 일반선박 간 통신연계를 위해 5톤이상 어선이 VHF(DSC) 무선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단가인 대당 60만원의 50%를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총 2억 5천만원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다.
 - 국내 해양사고의 6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는 이중 일반선박과 어선 간 충돌사고가 전체 선박 충돌사고의 37.4%를 차지한다.
 - 현행 선박안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5톤이상 연근해어선은 SSB(통신)무선설비, 원양어선은 SSB 및 VHF(초단파), 일반선박은 10마일이상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10톤 이상 여객선과 20톤 이상 화물선의 경우 SSB 및 VHF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선박검사 대상어선 13,735척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193척이 VHF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중 원양어선이 464척이며 연근해어선은 약 5.5%인 729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 VHF는 항해안전을 위한 선교간 통신 및 항무·일반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VHF(DSC) 무선설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해양사고 예방 및 조기 인명구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박위치정보 2월부터 무료제공

- 해양수산부는 민간 선박운항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선박운항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선박위치 정보를 2월부터 각 선사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 인터넷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해수부 해양안전정보 홈페이지(www.gicomsgo.kr)에 접속, 전자해도 화면상에서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해수부는 선박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해역에

운항중인 국적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VMS는 선박에서 발사된 선박위치신호가 육상기지국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해수부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거리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통신망과 위성통신을 이용하는데 위치보고 주기가 2~12초로 매우 짧아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직접 구축한 AIS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종전에는 일부 선사에서 통신회사의 유료 VMS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해수부가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각 선사는 전자해도기반의 VMS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가 제공하는 VMS는 선박위치정보 외에 전세계 해역에 대한 전자해도 및 선박등록정보, 선박명부, 선박의 과거항적자료, 국내항만 선박출입항 및 항만국통제(PSC) 정보를 포함한 선박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정보시스템이다.
- 현재 약 420여척에 이르는 국적 원양선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위성단말기와 AIS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연안선박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2008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AIS단말기를 탑재하게 된다. 다만 어선의 경우 단말기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모든 어선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5천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 운항 금지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 4월 5일부터 시행
 - 2005년 4월 5일부터 해양오염사고에 취약한 노후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되고 소형선박 유조선의 이중저구조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노후 단일선체유조선 및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을 보면,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이상의 일반 단일선체유조선 가운데 선령 26년 이상된 선박의 운항이 4월 5일부터 금지되며 선령 26년까지 선박은 2010년까지만 운항이 허용된다.
 - 중급유(비중 0.9이상 기름)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도 4월 5일부터 운항이 금지되며 재화중량톤수 600톤에서 5,000톤 사이 선박은 2008년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 그러나 4월 5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가운데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중급유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선령 26년까지는 국내 유류수송차질 등을 고려해 2010년까지 운항을 허용하고 600톤에서 5000톤은 선령에 따라 2015년까지 운항을 허용한다.

- 또 현재 재화중량톤수 500톤이상 5,0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해 이중저구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재화중량톤수 5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해서도 이중저구조를 구비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 운항하는 선박은 이중저구조를 갖지 않아도 2020년까지 운항이 허용된다.
 - ※ '이중저' 구조는 소형선박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체바닥부분만 이중으로 만든 선박이다.
-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국내 유류수송 차질 등을 고려해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퇴출기간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정유사와 관련 업·단체 관계자들로 대책반을 구성해 원만한 합의를 거치고, 대형 노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출과 중급유 운송금지 및 소형선의 이중저 설치 대상 확대로 해양환경이 더욱 보호되고 과거의 씨프린스호 같은 대형오염사고의 발생을 사전 예방해 보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형저인망정리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관한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불법어업의 근원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일 입법예고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범위를 저인망어구를 사용하는 저인망어업과 저인망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한 트롤어업으로 정하고, 막대기·파이프·빔 등을 사용하는 트롤·연안새우방·새우조망·형망어업을 제외키로 했다.
- 또 정리어선의 관리·해체·소각 등을 할 수 있는 선박관리업체는 한국오염방재조합, 어항협회, 해운법에 등록된 선박관리업체, 해양오염방지법에 신고된 선박해철업자로 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이들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 정리희망어선에 대한 지원금은 5톤급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 2000만원과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 2000만원 등 약 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 해양부는 정리대상어선을 1000여척으로 보고 약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리신청어선이 1000척을 초과할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해 지원척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 정리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 3월까지다.
- 해양부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를 계기로 합법어선의 불법행위도 강력히 단속해 근절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과 EEZ 체제하에서의 어업질서확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규등록 내항화물선 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제한

○ 정부는 내년부터 내항화물선 사업에 신규투입(등록)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다.

- 해양부는 2004년 3월부터 해운선사 및 단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교환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신규투입(등록)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안)'을 제정·공포했다.

-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새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은 선령 15년 미만으로 제한되며 폐기물운반선의 경우 화물의 특성을 감안, 17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 단,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1번이상 투입됐던 선박과 이번 고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국내 도입을 위해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99년 내항화물선시장 진입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내항화물선 시장에 중고선 진입이 급격히 증가해 선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 위험 증가 및 내항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관련업계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 15년 이상 노후선 비중 : 1998년 약 45%, 2003년 약 57%

※ 노후선 사고율('99~'03) : 15년 이상 3.1%, 15년 미만 1.9%

- 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확보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를 개선시키고, 신조선 증가에 따른 국내조선소 수주 증가 및 해상사고 발생위험 감소 나아가 업계 체질개선 등 연안해운업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두 개 주파 어선 탐지기

○ 日 후로노전기는 2주파를 이용한 서치라이트 소나 CH-300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 3월초부터 발매예정인데 2월 10일 도쿄 국제 보트쇼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소형선 망어선, 시치 및 까나리잡이어선, 유어선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점을 내재하고 있다. 기존의 1주파 탐지방식에 비해 CH-300은 높고 낮은 두 개의 주파를 혼합 처리하는 회로를 탑재해 고도의 신호처리가 가능하게 때문에 물고기의 크기를 식별할 수 있다.

- 실치 및 까나리 등과 같은 작은 물고기와 전갱이 고등어 등을 동시에 탐지하더라도 조업대상어종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조업형태, 조업종류, 어장조건 등에 맞춰 소나의 동작을 설정,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종별로 주파수가 달라 탐지기를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어군 추적기능 등을 탑재, 신속하게 어선을 조작하고 어획작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자료는 www.momaf.go.kr에서 발췌한 것입니다.